

『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구미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는 법적·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안전도시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시장과 시민의 책무, 시민의 권리 및 참여(안 제1조 ~ 제5조)
-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, 사업의 지원, 위탁운영(안 제6조 ~ 제8조)
- 안전도시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장 등의 직무, 운영, 해촉(안 제9조 ~ 제15조)
- 안전도시 사업의 실무위원회, 수당 및 여비 등(안 제16조 ~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조(기본이념)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전도시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-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, 사업 계획수립,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, 업무분담 및 조정, 지원에 관한 사항,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 등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 등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도시의 법적·제도적 기틀마련, 안전도시 사업 종합계획수립, 손상감시체계 시스템운영,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로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

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